

라. 농작업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1)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기술보급부 생활경영과(지방농촌지도관 조금순·지방농촌지도사 홍희연, 031-229-5881,5)입니다.

□ 목 적

-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재해발생을 줄이고 농작업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과 능력 향상으로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
- 농작업 재해 예방 관리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 모델 확립

□ 추진방향

- 농업인의 주도적 참여와 안전의식 향상으로 농작업 안전보건의 생활화
- 전문가 컨설팅 등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작목 및 마을별 특성에 맞는 농작업 재해 예방 대책 추진
- 사업추진단 운영으로 지도, 연구, 학계,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전문적 지원 확보
- 사업시행 성과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 실시와 피드백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4조 제1항(지역농업 균형발전 추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③항 2(농어업 재해 및 농어업 활동에 따른 인적재해 등에 대한 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3개소(2년차 - 이천, 여주, 3년차 - 광주)
- 사업비 : 280백만원(국비·지방비 각 50%), 개소당 3년간 2억원 - 2년차 각 120백만원(이천, 여주), 3년차 40백만원(광주)

□ 사업내용

○ 연차별 사업 추진내용

구분	2년차 마을('11~'13)	3년차 마을('10~'12)
주요 내용	○ 개선방안 및 안전지침 실행(교육, 안전관리, 보조도구 보급, 작업개선, 운동프로그램 및 재활치료 등)	○ 안전실행 및 사업성과 평가 ○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 ○ 유형별 농작업안전관리모델(안) 도출

○ 연차별 세부 사업내용

구분	세부 사업내용
1년차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단위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의 역할이 많으므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적정 인원 이상을 확보하고 여성 중심으로 하는 농작업 개선 등을 위하여 여성을 포함하여 구성.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총 사업기간인 3년으로 하고,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직을 그만두게 될 경우라도 운영위원회 위원직은 유지하여 사업 수행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함. - 여성의 운영위원회 참여비율은 3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업 안전관리 핵심리더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지도사, 마을 운영위원 등에 대한 체계적 농작업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농작업 안전관리 핵심인력으로 양성 - 각종 전문교육, 연찬회, 세미나, 평가회 등 지속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업 안전보건상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문제 진단, 분석, 개선안 도출의 일련 과정을 <u>중앙사업 추진단의 각 도 지역사업추진단 주체로 추진하는 『농작업 안전보건 진단관리 컨설팅』</u> 용역으로 종합하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수행 시 농업기술센터의 종합 조정, 마을 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 중앙·도 지역사업추진단의 지원 필요 - 문제 진단 분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단위 : 건강검진, 건강실태조사, 농작업안전 인식조사 등 · 농가단위 : 현장안전보건현황, 개선 요구도, 농작업 유해환경 등 · 각종 조사는 마을 운영위원 및 컨설팅 조사요원이 협력하여 실시되 농가별 농작업 현장 안전보건 현황 점검은 마을운영위원 주축으로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관찰 및 설문 실시

구분	세부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및 마을단위 개선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진단결과를 기초로 하여 농가 및 마을단위 개선활동, 교육, 운동 프로그램, 재활요법 등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도출 시는 센터, 도 지역사업추진단, 운영위원회, 참여농업인 전체, 관련 전문가 등의 지속적인 대화, 협의회,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하여 최선의 방안 도출 · 1차년도 사업초기에 참여형 개선활동(PAOT) 워크숍을 통하여 해당 마을 농작업 안전보건 문제점 진단 및 사업 참여 개개인의 개선안 도출
	<p><개선 방안(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업 안전의식 향상 및 기초안전 관리 : 농약 안전사용 및 보관, 농기계의 안전운전·주행·정비, 개인 보호장비 사용, 올바른 작업자세, 밀폐공간 안전작업 요령 등 각종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 실시, 농작업 안전기록부 작성, 농약보관함 보급, 농약방제 보호장구 보급, 생활공간의 농약 오염 방지를 위한 공동 농약방제복 세탁 및 샤워실, 농기계 안전장치 점검 수리, 농기계 창고 및 주행로
	<p>정리 정돈, 농가주변 및 창고 정리정돈, 작업동선 개선, 작업시간 관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업 유해환경 개선 : 작업자세 개선을 위한 보조도구 및 작업대 보급, 중량물 운반 작업 개선을 위한 보조도구·장치 보급, 하우스 내 온열 부담경감을 위한 시설설치, 하우스 중간휴게실 설치, 소규모 선별작업장 설치, 운반이나 작업용 보조도구 활용을 위한 고랑폭 확보 등 - 농작업 관련 건강 개선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교육, 운동 프로그램, 재활요법 등 시행, 소규모 휴식시설 설치, 피로해소 기구 보급 등
1년차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방안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술센터, 마을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 1차 년도에는 안전보건교육, 안전기록부 작성, 농기계의 안전 점검, 농기계 창고 및 주행로 정리 정돈, 농가 및 창고 정리 정돈, 농약 안전 보관 및 사용, 작업동선 개선, 작업시간관리 등을 기본적인 안전관리 중심으로 개선방안 실행 - 마을용 농작업 안전기록부 1부는 운영위원장이 작성하고 농가용 안전기록부는 마을 대표 농가 5호 이상 기록(중앙 제작 배부) - 마을 주작목의 농업기술 담당자, 병해충종합관리(IPM) 담당자 등의 협조로 농작업 개선을 위하여 최신 농업기술과 농약 적정 사용 등 기술적 지원 병행 실시 - 농기계 담당자 협조로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 및 순회 수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 생활체육협의회, 보건(진료)소, 소방서 등의 협조로 생활체육, 운동 프로그램, 만성질환관리, 금연, 절주, 소방안전, 응급상황 대처법, 농로 및 전기 안전 점검 등 지원 확보

2년차 · 3년차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지역사업추진단 및 마을 운영위원회 구성 : 1차년도 마을과 동일 ○ 농작업 안전관리 핵심리더 양성 : 1차년도 마을과 동일 ○ 개선방안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에 도출된 개선방안 및 당해 연도 사업 추진 중 추가로 제시된 개선방안을 협의하여 실행 - 개선방안 실행을 위한 사업비 집행방법 : 1차년도 마을과 동일 ○ 평가 및 사업결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에 안전보건 현황 점검 등을 통하여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보완사항 피드백 - 3차년도 마을의 경우 3년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업 평가 실시 : 세부내용 추후 송부 - 사업 후 타 지역에서 일반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농작업 안전관리 방법 공유
-----------------------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농촌지원국 지도개발과
 - 도 농업기술원 : 농촌자원사업 관련 과·팀
 -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촌자원사업 관련 과·담당
- 사업추진주체별 역할
 - 농촌진흥청 및 중앙 사업추진단 : 사업기획 및 예산, 전문교육, 홍보, 평가, 지역지원 등
 - 도 농업기술원 및 도 지역사업추진단 : 마을 선정, 도내 안전사업 추진 종합지원, 홍보 등
 - ※ 농작업 안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작물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마을 선정 심사에 도 지역사업추진단이 참여하도록 함.
 - 시군 센터, 도 지역사업추진단 : 사업 주관, 진단, 마을 사업실행 지원, 농업 인교육, 홍보, 평가 등
 - 사업마을 및 운영위원회 : 진단 및 계획 수립 참여, 개선안 실행, 안전관리 생활화 등

○ 사업시행

- 사업대상지역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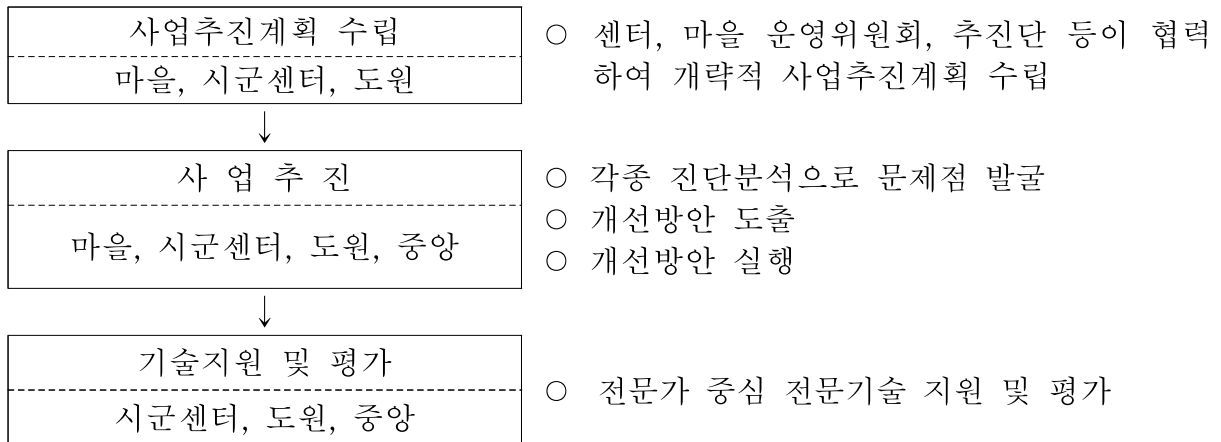
- 사업대상지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변경 확정 후 변경사항을 상위기관에 즉시 제출

- 사업비 집행

- 농업기술센터 집행 사업비와 마을지원 사업비는 시군여건에 따라 편성하되 농작업 안전보건 진단관리 컨설팅은 변경 불가 <참고 1>
- 민간보조사업비는 보조금지급규정에 의해 마을 사업 운영위원장에게 지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예산집행상황 등 사업추진상황 지도 점검

○ 사업 추진 절차



□ 행정사항

- 추진계획 제출 : 3. 20(제1호 서식)
- 추진실적 제출 : 12. 5(제2호 서식)

※ 참고 : 1. 개소당 사업예산 집행 예시

2. 농작업 위험요인 및 관련 건강장해
3.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신청서
4.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대상선정 심사표 예시

<참고 1>

개소당 사업예산 집행 예시

주체	세부내용	사업비집행액(백만원)		편성비목
		2차년도 (‘11선정 마을)	3차년도 (‘10선정 마을)	
농업 기술 센터 또는 마을	◦ 교육 및 교육시 수반되는 운영비, 견학, 회의 등 참석보상, 조사수당, 안내판, 화판, 교재제작, 컨설팅 등	20% 내외	50% 내외	수용비 운영수당 강사료 보상금 재료비 임차료 위탁사업 비 연구개발비 등
마을	◦ 농기자재, 교육기자재, 소규모 휴식 시설, 피로해소 기구, 농작업 보조 장비, 농작업 환경 시설개선, 안내 판 등	80% 내외	50% 내외	민간자본 보조
총계		120 (100%)	40 (100%)	

* 시군여건에 따라 내용 및 집행액은 적의 조정 가능하며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도록 편성

※ 농작업 안전보건 진단관리 컨설팅 용역 추진절차 및 방법

- 추진주체 : 중앙 사업추진단의 각 도 지역사업추진단
- 용역 계약서 작성 : 센터 또는 마을, 각 도 지역사업추진단 소속 대학(병원)
 - 단 건강검진의 경우 각 도 지역사업추진단 소속 대학(또는 병원)의 여건상 검진이 불가능하면 추진단의 결정에 따라 다른 기관과 계약하여 검진을 실시하되 검진 결과에 대한 해석, 처방, 상담, 개선안 제안 등은 지역사업추진단장 또는 지역사업추진단 내 위원이 실시
 - 전체 컨설팅 금액은 중앙 사업 추진단에서 세부내역 산출 후 제시
 - 건강검진 비용은 사업 참여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단가와 검진 참여 예정자 수를 기초로 계약하고 실제 검진 수행 후 정산 처리. 근골격계 질환 진단 방사선 검사는 도 지역사업추진단, 센터,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가능
- 컨설팅 세부 내용, 추진절차 및 일정 : 추후 세부 계획 제시

※ 사업비 집행 참고 사항

- 농작업 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별 농가에 보급하는 편이장비나 시설은 농가당 지원액이 5백만원 미만이 되도록 하고 시군 여건에 따라 농업인 자부담비율을 정하여 보급하되 지원액이 클수록 농가 자부담 비율 상향 조정
-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일반농기계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농작물 관리, 수확, 운반, 선별, 포장, 농약살포 등의 인력 농작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보급할 가치가 있는 편이장비 및 시설
(소형동력운반차, 부착기 포함)
- 농작업간 휴식을 위한 공동 휴식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찜질방 등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소규모 휴식시설에 한함
- 마을내 사업대상 작목이 다양할 경우 교육, 운동프로그램 등 전 작목에 적용 가능한 것은 다른 작목도 포함하여 추진하되 농작업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나 시설 지원은 주작목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기타 작목은 농업기술센터, 마을 운영위원회의 협의 하에 지역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 마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농작업 보조도구 및 장비 등은 사업 참여 농업인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하여 보관, 관리, 활용 신청, 배정 등에 대한 원칙을 합의하여 규정을 만든 후 활용하도록 조치. 보관 장소 사전 확보 필수
- 개선방안 도출에 따른 사업비 집행 시 사업 참여 농업인 개개인의 요구도와 마을 공동 요구도를 수렴한 뒤 참여 농업인 및 마을 전체의 농작업 안전보건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참여 농업인 모두에게 나누어 주기식, 농작업 안전보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마을 숙원 사업에 지출하는 사업비 등은 지양

<참고 2>

농작업 위험요인 및 관련 건강장해

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위험요인	건강장해
원예	시설원예	채소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반복 동작, 농약, 밀폐환경, 고온다습, 응애, 진드기	○ 농약에 의한 여러 가지 건강장해 (각종 급성중후군, 만성신경영향, 면역기능약화 등) ○ 불편한 자세, 반복동작으로 근골격계질환(요통,관절염,근막통증후군 등) ○ 유기성먼지에 포함된 알레르기원(응애류, 벼섯 포자, 꽃가루 등)에 의한 알레르기성 피부염 또는 알레르기성 호흡기질환
		화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반복 동작, 농약, 밀폐환경, 고온다습, 응애, 진드기, 꽃가루	○ 밀폐 및 고온다습 환경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혈압상승, 호흡곤란 등
		버섯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반복 동작, 농약, 밀폐환경, 고온다습, 포자	
	노지원예	노지채소(고추 등)	농약,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반복동작, 중량물, 자외선 등	○ 농약에 의한 여러 가지 건강장해 (각종 급성중후군, 만성신경영향, 면역기능약화 등) ○ 불편한 자세, 반복적인 동작으로 근골격계질환(요통,관절염,근막통증후군 등)
		과수	농약, 부자연스런 자세와 반복동작, 무거운 물체	○ 뜨거운 햇볕(자외선)에 의한 열사병, 피부질환 등
	수도		농약, 부자연스런 자세와 반복동작, 곡물먼지, 기타 찌찌가무시 등 동물매개감염병	○ 농약에 의한 여러 가지 건강장해 ○ 근골격계질환 ○ 유기성먼지(곡물분진 등)에 의한 동물매개감염병 등
축산		유기성먼지, 유해가스(암모니아 등), 밀폐환경, 스트레스, 미생물(곰팡이,세균,바이러스)	○ 유기성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및 알레르기성 질환(천식 등), 엔도톡신에 의한 패혈증 ○ 고농도 암모니아 가스 중독 ○ 인수공통전염병 (조류독감 등) ○ 동물매개감염병 (유행성출혈열,뇌염)	

[제1호 서식]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추진계획(2·3년차 마을)(3. 20)

○ 마을명 :

구 분		추진내용	예산 (천원)	비고
사업운영				
현황진단관리				
개선 방안 실행	농작업 안전 의식 향상 및 기초안전관리			
	농작업 관련 건강 개선			
	농작업 환경 유해요인 개선			
	기타			
계				

[제2호 서식]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추진실적 (12. 5)

1. 일반현황

지역	마을명	주작목	총가구수 (호)			사업참여 농가(호)			사업 참여 농업인(명)		
			농가	비농가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도											
	계										

2. 사업추진현황

가. 마을 운영위원회 활동

지역	마을명	위원수 (명)	활동실적		주요내용	비고
			회의횟수 (회)	참여인원 (명)		
도	1년차					
		소계				
	2년차					
		소계				
	3년차					
		소계				
계						

나. 현황진단관리(컨설팅)

농작업 현장 안전보건 점검

지역	마을명	참여인원(명)	추정일	비고
도				
계				

□ 도출된 개선방안 및 실행 현황

○ 마을 명 :

구 분	추진내용	개선방안 (년~년)			2012년 실행실적	
		계획 연도	공동 (단위)	개별 (단위)	공동 (단위)	개별 (단위)
농작업 안전 의식 향상 및 기초안전 관리	농약방제복 착용	2010		50개		50개
	농약보관함	2010		50개		50개
소계	종 대					
농작업 관련 건강 개선	벨트 맞사지기	2011	2조	2조		
	혈압기	2011	2조	2조		
소계	종 대					
농작업 환경 유해요인 개선	선별 작업대 설치	2011	5대			
소계	종					
기타	화판제작	2011	10조			
소계	종 대					
총계						

□ 교육 및 회의 실적

지역	마을명	기초안전		건강증진		회의, 견학		주요내용
		횟수 (회)	인원 (명)	횟수 (회)	인원 (명)	횟수 (회)	인원 (명)	
도								- 기초안전교육 : 농약안전, 안전보건교육, 참여형개선활동, 농기계 안전 등 - 건강증진 : 근골격계질환 예방, 웃음치료, 식생활 교육 등 * 회의, 견학 : 운영위원회의 제외
	계							

3. 농작업 재해 현황(2012. 1 ~ 11월)

순번	성명	연락처	사고일자	사고경위	조치내용
1					
2					
3					
4					
5					
-					

4. 사업비 집행 실적

○ 총괄

(단위 : 백만원)

지역	마을명	총 계	국 비	시군비	자부담	기 타
도						

○ 사업비 집행 세부실적

구 분	추진내용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비고
사업운영					
	소 계				
현황 진단관리					
	소 계				
농작업 안전 의식 향상 및 기초안전 관리					
	소 계				
농작업 관련 건강 개선					
	소 계				
농작업 환경 유해요인 개선					
	소 계				
기타					
	소 계				
계					

5. 홍보실적

지역	마을명	홍보				교재
		계	TV·라디오	신문·잡지	인터넷	
도		회	회	회	회	총부
계						

6.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7.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

8. 관련사진

※ 첨부 : 마을별 실적

2)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기술보급부 생활경영과(지방농촌지도관 조금순·지방농촌지도사 홍희연, 031-229-5881,5)입니다.

□ 목 적

-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화 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 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 작목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업 생산성 증대
- 고령 및 여성 농업인도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농작업 여건 조성

□ 추진방향

- 농업인의 농작업 유해 요인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농작업의 편이화, 선진화 도모
- 기계화되기 어렵고 장시간의 농작업으로 인해 신체에 무리가 오는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편이장비의 보급 확산
- 특정한 신체 부위의 장시간 반복 작업, 불편한 작업자세, 과중한 중량물 취급과 운반 등으로 인한 인간공학적 농작업 환경 개선
- 인체공학상의 안전성, 적절성 등을 고려하고, 농가에 보급 가능한 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전문가 지원 체제 마련 및 운영
- 농촌현장에서 필요한 편이장비의 발굴 및 개발, 보급 확산 기반 조성

□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제17조(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간 산업간 안전 불균형 해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5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 농촌진흥법 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7개소(용인, 과주, 화성, 안성, 양주, 가평, 연천)
- 사업비 : 350백만원(개소당 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

- 사업대상 : 마을(리) 단위 또는 농업인 단체(작목반, 연구회, 지도자회, 생활 개선회 등 단체, 이하 단체)
- 선정기준(선정심사표 예시 참조)
 - 주작목 농가 비율이 높고 영농규모가 커서 파급 효과가 큰 마을 또는 단체
 -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개선이 필요하고 보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마을 또는 단체
 - 사업 참여 희망 농업인수가 최소 15농가 이상으로 개선방안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마을 또는 단체
 - 회장, 이장, 지도자 등 대표자의 지도력이 탁월하며 참여 마을 및 조직의 활동이 활발하고 화합이 잘되는 마을 또는 단체
 - 사업대상은 시행지침,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장비 지원효과를 확산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마을 또는 단체를 선정

□ 사업내용

- 해당 작목의 농작업 여건 파악 및 필요 편이장비의 조사, 선정, 보완, 개발, 평가 등 전문가 컨설팅 수행
- 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의 선정 및 보급
 - 전문가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농작업장 위험 요소와 원인을 감소시키고 생산성, 효율성, 품질의 개선 효과가 큰 편이장비
- 지역에서 시급히 보완, 개발이 필요한 장비 보급
 - 작업자세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 작업능률 향상, 특정 신체부위의 반복 작업 및 과도한 힘 사용 개선 등을 위한 편이장비
- 보급한 편이장비의 운영과 평가, 분석 및 관리 등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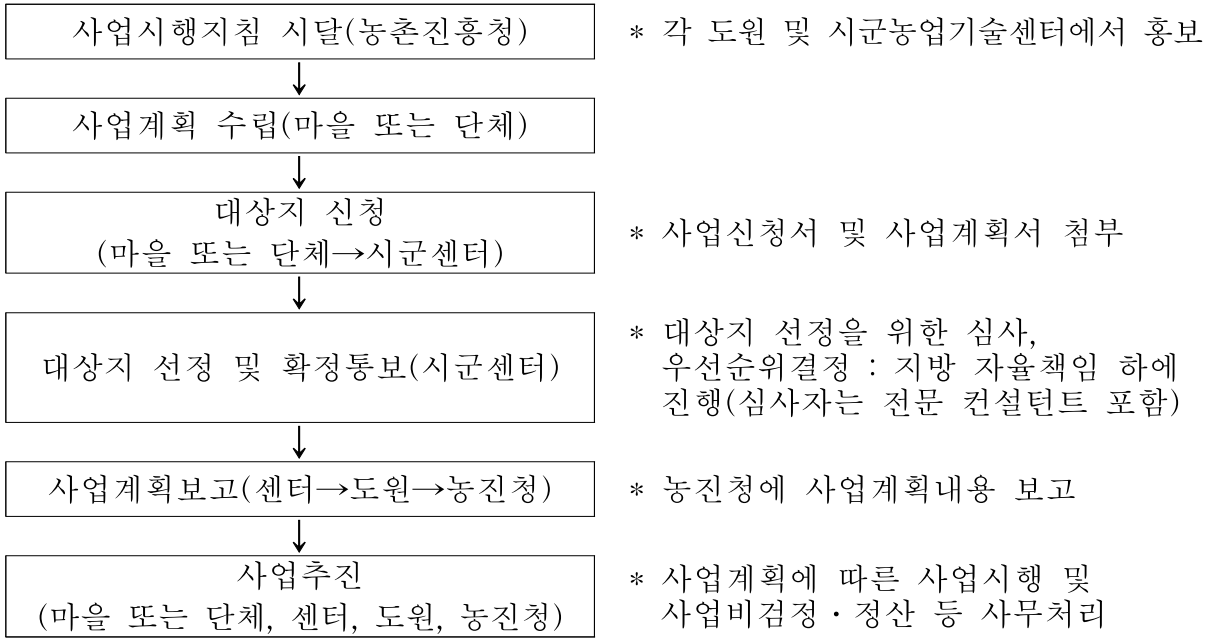
□ 사업추진방법

-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
 - 이장, 회장, 지도자, 농업인 등 적정 필요인원을 조정하되 10명 내외로 구성
 - 사업계획의 협의, 사업기반 조성, 운영관리 등 사업 총괄
 - 해당 농작업의 실태 및 작업환경 파악, 중점 보급 장비로 선정된 편이장비의 보급 및 관리와 운영, 개선아이디어 수집 등 적극 협조
- 농작업 편이장비 전문가 컨설팅에 의해 선정된 편이장비를 중심으로 보급하되, 해당 전문가의 인간공학적 메커니즘과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험한 다양한 개선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기존의 장비를 적합하게 수정보완하거나 개발한 편이장비를 중점 보급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 지원되는 편이장비는 운영 및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실행
- 사업성과를 높이고 체계적인 편이장비 지원을 위하여 농작업 여건 및 필요장비의 선정, 평가, 성과 분석 등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함
 - 관련 통합컨설팅 세부추진방법 및 조사 양식, 컨설팅전문가 명단 등은 추후 송부
- 사업 시행 단체 또는 마을을 대상으로 편이장비의 지역 적합성 및 보완사항 등 검토 후에 현장 적용
- 편이장비 보급 및 사용 전·후의 작업자세, 안전성, 생산성, 경제성, 만족도 등 효과 평가 및 피드백 실시

□ 사업추진체계

- 사업 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 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 도 : 농업기술원 생활경영과 생활자원팀
 - 시군 : 농업기술센터 농촌생활자원 업무 관련 과·담당

○ 사업추진절차 개요



○ 사업주체별 역할 분담

농촌진흥청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장기 방향 설정 ○ 농작업 편이장비 위원회 운영, 장비선정, 기술 지원 등 ○ 지도자료 제공 및 사업 홍보, 공모우수자 시상 등 ○ 심포지엄, 세미나, 연찬회, 평가회 등 개최
도 농업기술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계획, 지역단위 홍보 ○ 사업 참가자 대상 순회교육, 컨설팅 등 지원 운영 관리
시군 농업기술센터 통보↕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선정 및 사업계획 협의, 점검, 조정, 자문 ○ 사업관련 교육, 홍보, 견학 등 지원 ○ 사업추진 및 평가 등 지도, 점검
사업수행 마을 또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등 ○ 사업 추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전문가 컨설팅 수행, 사업 평가 및 분석 지원, 결과 피드백, 사업비 집행 등

○ 사업대상의 변경

- 사업대상 단체 또는 지역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시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변경, 확정된 후 변경내용을 상위기관에 즉시 보고

○ 사업비 집행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보조금 지급규정에 의해 단체 또는 마을 대표에게 지원된 사업비를 시군 여건에 따라 편성, 관리(사업비 집행예시 참고)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예산 집행 등 사업추진상황을 지도 점검

○ 추진순기표

세 부 내 용	추진시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 선정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지역 농작업 여건 조사 및 분석 등 컨설팅													
○ 편이장비 조사, 선정, 보완 개발, 분석 및 보급 등													
○ 사업평가 및 완료 보고													

□ 사후관리 및 성과측정

- 지원한 편이장비는 마을 및 단체에서 구성한 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여 관리능력과 책임감이 있는 대표가 총괄 관리하되, 파손 및 고장, 망실 등에 대한 이용규칙을 마련하여 운영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3년간 사후관리 및 활용도를 점검하여 성과 및 보완사항을 피드백
- 시도 및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해 지원금을 집행하고, 타용도로 이용 시 자금을 회수하고 금후 사업대상에서 제외
- 농작업 편이장비 사용효과에 대한 조사(매년 10~12월 사이에 실시)
 - 수행방법 : 지역별 농작업 편이장비 전문가 컨설팅 결과 활용
(컨설팅 5단계별 조사표 측정결과 및 최종보고서 등)

□ 사업평가 및 환류

- 성과측정결과를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사업지역별로 사용효과, 능률향상도 등 조사 및 분석
- 우수 농작업 편이장비 공모 및 사업 시상으로 인간공학적으로 기능이 개선된 농작업 편이장비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체계적인 사업 확산 계기를 조성함

□ 2013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의 보급 효과를 높이고 확산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마을 또는 단체의 주소지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
- 신청자격 : 2012년 지원대상 및 조건과 동일
 - 지역별, 작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 개발된 편이장비 구입
-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
 - 사업기간 : 1년
 - 지원금액 : 개소 당 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정도)
 - * 지원금액과 비율은 지방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함
- 사업신청절차
 - 사업신청(마을 또는 단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제1호, 제2호 서식)
 - 대상지 추천 및 선정
 - 시군에서 추천한 대상지를 자체 심사계획에 의해 지원 우선순위 결정
 - 지자체 예산신청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마을 선정
 - 선정기준 :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지방자체 심사계획에 의해 선정
 - 자체 심사표(예시) 참고
 - 예산신청(시도지사 → 농촌진흥청(검토) → 기획재정부)
 - 지원대상지로 선정된 마을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추진협의회 구성, 사업계획 수립, 관리자의 리더십 구축, 참여주민의 교육 등 사업추진 능력을 구축토록 함

○ 기타사항

- 기본 사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 ※ 선정 심사표[예시] 참고
- 사업계획 제출 : 3. 20(제3호 서식)
- 사업추진결과 제출 : 11. 30(제4호 서식)

<참고 1>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관련 용어 정의

- 『농작업』이라 함은 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 등에 관련되어 농업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업
- 『편이장비』라 함은 농작업과 관련된 작업자세의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의 개선, 작업능률 향상, 특정 신체부위에 의한 반복 및 과도한 힘이 필요한 작업의 개선, 생물학·화학적 문제점의 개선 등을 위한 농작업용 장비로서 소형 엔진 및 전동식(충전식 배터리) 장비 등을 포함함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농업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이화 장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
- 『농작업 편이장비 전문가 위원회』(이하 편이장비위원회라고 칭함)는 효과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에서 구성하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하고, 매년 보급 가능한 편이장비의 개발 및 보완, 목록 선정은 물론, 사업 평가, 자문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말함
 - 편이장비위원회는 인간공학, 산업공학, 안전공학, 농기계학 등 농작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부정기적으로 협의회, 교육 및 세미나,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을 지원함.
- 『농작업 편이장비 사업추진위원회』(이하 사업추진위원회라고 칭함)는 사업을 집행하는 단체 또는 마을 단위에 구성하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 운영 및 집행관리 등 사업을 총괄함
 - 사업추진위원회는 이장, 회장, 지도자 및 사업 참여 농업인중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하며, ‘○○마을 또는 ○○(단체명) 농작업 편이장비 사업추진위원회’라고 칭함

<참고 2>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국비예산 활용(예시)

구 분	세 부 내 용	비 율
사업운영 및 평가	○ 사업추진위원회 및 사업대상자의 교육, 견학 등 ○ 사업관련 안내팸말, 화판, 사진첩, 교재 제작 화상교육 기자재 구입 등 일체 운영(사업기반조성 및 관리운영 등)	5~10% 내외
	○ 농작업 여건 및 필요 편이장비의 조사, 선정, 보완, 개발, 평가 등 전문가 컨설팅 수행비	10%
장비 선정 및 보급	○ 지역별, 작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 개선된 편이장비 구입 (농작업 편이장비 전문가 컨설팅에 의해 선정된 장비를 인간 공학적으로 수정 보완하거나 최적 작업 방법을 도출하고 표준 화 되도록 개선하여 보급)	50~80% 내외
	○ 지역별, 작목별 농작업 여건에 필요한 편이장비 구입 (지역에서 시급히 요구되어 농작업에 필요한 장비 보급)	0~30% 내외
합 계		100% (50백만원)

* 사업운영 및 평가 사업비 : 농업기술센터로 편성(연구개발비 10%, 수용비, 운영수당, 강사료, 보상금, 재료비, 임차료 등)하거나 사업대상 단체 또는 마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의 조정

<참고 3>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사업 선정 심사표(예시)

□ 마을(단체)명 :

항 목	배점	내용	점수	비고	
사업추진 필요성 (40점)	농작업 문제점 (10점)	상(10)	과도한 힘의 사용, 신체 특정부위의 반복사용		1개 이상 해당 필요
		중(8)	부적절한 작업높이, 불편한 작업자세, 피로의 경감		
		하(6)	여유 공간의 확보, 신체압박부위의 해소, 생물학, 화학적 유해요인		
	해당 작업기간 (10점)	장기(10)	6개월 이상		연간 해당기간
		중기(8)	3~6개월 미만		
		단기(6)	3개월 이하		
	해당 농가 (회원)수 (8점)	다(8)	70% 이상		해당 농가(회원)수/ 전체농가(회원)수 ×100
		중(6)	50~70% 미만		
		소(4)	50% 이하		
	해당 농업인 (회원)의 평균연령 (6점)	고년령(6)	65세 이상		참여 농업인 (회원) 연령/ 참여 농업인 (회원) 수
		중고년령(5)	55~64세		
		중년령(4)	54세 이하		
	해당 농작업자 (회원)의 여성 비율(6점)	다(6)	50% 이상		참여 농업인 (회원) 여성/ 참여 농업인 (회원)수
		중(5)	30~50% 미만		
		소(4)	30% 이하		
사업추진 능력 (30점)	참여비율 (6점)	다(6)	60% 이상		참여 농업인(회원)수/ 전체 농업인(회원) 수×100
		중(4)	40~60% 미만		
		소(2)	40% 이하		
	위원장의 지도력 (6점)	우수(6)	2건 이상		과거 마을(단체) 활동 추진실적
		보통(4)	1건		
		미흡(2)	실적 없음		
	위원회의 추진능력 (6점)	우수(6)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분담, 활동경력이 적절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현황
		보통(4)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분담이 적절하나 활동경력이 부적절		
		미흡(2)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분담, 활동경력이 부적절		
	장비 운영 관리계획의 적절성 (12점)	우수(12)	사업의 추진계획이 적절하며 체계적임		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보통(8)	사업의 추진계획은 적절하나 체계적이지 못함		
		미흡(4)	사업의 추진계획이 미흡하며 체계적이지 못함		

항 목		배점	내용	점수	비고
사업의 경제성 (20점)	편이장비의 예상가격 (5점)	저가(5)	100만원 이하		장비의 개당 가격
		중가(4)	100~300만원 미만		
		고가(3)	300만원 이상		
	예상 성능 및 기능 (5점)	우수(5)	70% 이상		해당 문제점의 예상되는 경감 정도
		보통(3)	50~70% 미만		
		미흡(1)	50% 이하		
	이용률 (10점)	고(10)	500시간 이상		연간 가구(회원) 당 사용시간
		중(8)	200~500시간 미만		
		저(6)	200시간 이하		
사업의 기대효과 (10점)	유형효과 (5점)	상(5)	200시간 이상		연간 편이장비 사용[가구(회원)당 농작업 경감시간×해당 편이장비 사용 가구(회원) 수]
		중(4)	100~200시간 미만		
		하(3)	100시간 이하		
	무형효과 (5점)	상(5)	3개 이상		해당 항목의 수 (근골격계 질환 등 농작업성 질환 예방,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피로경감, 편이장비의 확산보급홍보, 작업의 개선 중에)
		중(4)	2개		
		하(3)	1개 이하		
합계		100점			
종합의견					

※ 시군 여건에 따라 자율적 조정

※ 심사자 : 경험 있는 전문 컨설턴트 또는 관련 교수 참여

심사일 : 20 년 월 일

심사자 : 직

성명

(서명)

[제1호 서식]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신청서

1. 마을(단체)명 :

2. 가구 및 인구수(마을 또는 단체 중 선택)
(마을)

가구수(호)			성별 농업인수(명)			연령별 농업인수(명)				사업참여 희망농업인수 (명)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49세 이하	50~ 59세	60세 이상	계	

(단체)

성별 회원수(명)			연령별 회원수(명)				사업 참여 희망회원수 (명)
남	여	계	49세 이하	50~ 59세	60세 이상	계	

3. 농작업현황

대상 주작목	작업상의 문제점	해당농가 (회원) 수	비고

4. 마을(단체) 활동 현황

명 칭	참여인원(명)	최근의 주요 활동

위와 같은 여건을 가진 우리 마을(단체)에서 _____년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주소 : (전화:)

성명 : (서명 또는 인)

○○ 시(군) 농업 기술 센터 소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제2호 서식]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계획서

1. 마을(단체) 일반현황

- 마을(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위치, 가구 및 인구(회원)수, 사업 참여 농업인(회원)수, 주요 농특산물(우선순위), 농가(단체)소득(평균, 연간) 등

2. 농작업 현황

- 영농현황(영농형태별 면적, 규모 등)
-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보유시설, 장비 등)
- 농작업의 문제점 등 여건 : 개선이 필요한 작업 등

3. 세부추진계획

- 사업추진 배경·필요성·목표
 - 현재 작업상의 문제점 및 노동부담, 개선 필요성 등 설명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및 활동계획
 - 대표 및 추진위원의 약력 및 활동경력, 연락처 등
- 사업추진계획
 - 농작업 환경 개선작업 및 작업별 필요 편이장비 현황, 전문가 활용계획, 컨설팅 계획, 사업 참여자 교육 등
- 사업 종료 후 운영계획
 -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용계획, 운영규칙 마련 등
- 사업비 집행 계획

4. 기대효과 등

- 유형효과

- 무형효과

[제3호 서식]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계획 보고(3. 20)

1. 일반현황

도별	추진마을 (단체)명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2. 농작업 현황

우선순위	대상작목	대상작업	문제점	참여농가 (회원)수
* 5순위까지 작성				

3.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번호	성명	소속 및 직책	연락처	추진분야	비고
					위원장
					위원

4. 사업 추진일정

추진일정	사업추진내용

5.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내용	계	국비	시군비	자부담	비고

[제4호 서식]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추진 결과보고(12. 5)

1. 마을(단체)명

도별	추진마을 (단체)명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2. 사업참여 가구 및 인구수(마을 또는 단체 중 선택)

(마을)

총가구수(호)			참여 가구수(호)			참여 성별 농업인수(명)			참여 연령별 농업인수(명)			
농가	비농가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49세 이하	50~ 59세	60세 이상	계

(단체)

총회원수(명)			참여 성별 회원수(명)			참여 연령별 회원수(명)			
남	여	계	남	여	계	49세 이하	50~ 59세	60세 이상	계

3. 사업 추진 결과

○ 위원회 및 전문가 활용, 컨설팅 등 결과

일 자	주요내용	비고

○ 참여자 교육 결과

일 자	장소	인원	주요내용	비고

○ 사업비 집행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시군비	자부담	비 고
계					

○ 편이장비의 보급 및 활용 현황

편이 장비명	수량	가격	사용용도			이용 가능 농가 (회원)수	구입처	
			대상 작목	대상 작업	주 사용 기간 (월)		회사명	연락처

○ 편이장비 운영규칙(별도 첨부)

- 지원한 편이장비의 이용, 파손 및 고장, 망실 등 총괄 관리 운영 규칙 등

4. 사업 추진 성과(편이 장비의 사업추진 전-후에 대한 비교 평가, 컨설팅 결과 활용)

구분	사업 전	사업 후	주요내용	비고
사용효과				주지표
편이성				부지표
안전성				"
생산성 등				"

* 편이성 : 장비의 사용 용이성, 작업의 용이성, 작업자세와 반복작업 및 무리한 힘의 경감 등 문제점의 개선 정도에 대한 인간공학적 분석

** 안전성 : 근골격계 질환 등의 농작업성 질환 및 농작업 안전재해 발생 현황 분석

*** 생산성 등 : 해당 작업의 작업시간 단축 및 작업량의 변화에 대한 산업공학적 분석

○ 기대효과

- 편이장비 보급사업으로 인해 기대되는 유형, 무형 및 파급 효과 등

○ 관련사진

농작업 편이장비 사용효과 컨설팅(예시)	
사진	사진
장비 활용 효과 조사(예시)	컨설팅 설문조사(예시)

농작업 편이장비 개선 전·후 보급(예시)	
개선 전	개선 후
사진	사진

※ 첨부 : 사업추진위원회 및 컨설팅 활용, 편이장비의 사업 전-후 개선 비교 사진 및 현장 활용 사진 등 (사진 사이즈 1M 이상)

5. 우수사례 및 홍보실적

항 목	주요내용	비고
우수사례	편이장비 개발에 농업인 아이디어 반영	예시
홍 보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홍보 및 발간	예시

6. 문제점 및 개선대책, 건의사항

○ 추진 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항 목	현황 및 문제점	금후 개선대책(안)

○ 기타 건의사항

3)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기술보급부 생활경영과(지방농촌지도관 조금순·지방농촌지도사 홍희연, 031-229-5881,5)입니다.

□ 목 적

- 농약 안전관리 및 작업개선으로 농약중독을 예방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 조성
-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깨끗한 농촌 공간 조성

□ 추진방향

- 농약살포 또는 취급 시 보호구 착용으로 농약노출을 최소화하여 농약중독 예방
- 농약은 농약전용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폐 농약, 농약 빈병은 안전하게 처리
- 농작업 부담이 많은 농약살포 작업을 개선하여 농약 노출시간을 최소화 하고 작업능률 향상
- 농약중독 예방을 위한 농약 안전사용 및 안전관리 교육 강화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4조 제1항(지역농업 균형발전 추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③항 2(농어업 재해 및 농어업 활동에 따른 인적재해 등에 대한 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2개소(양주, 가평)
- 사업비 : 100백만원(국비·시군비 각 50%), 개소당 50백만원

□ 사업대상 및 선정 기준

- 사업대상 : 농약노출 및 유해 농작업 개선이 필요한 농촌 마을
- 대상마을 선정기준
 - 농작업 환경이 농약노출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마을
 - 농작업 부담이 많은 농약살포 작업으로 개선이 필요한 마을

- 사업농가 : 참여농가가 최소 20농가 이상으로 전체 농업인 중 참여희망 농업인의 비율이 높고 교육, 환경개선, 안전관리 등 개선방안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마을
- 사업기반 : 이장/지도자의 지도력이 탁월하며 마을민 조직활동이 활발하고 화합이 잘되는 마을 등

□ 사업내용

- 농작업 특성과 농작업자를 고려한 농약 보호구 등 지원
- 농약 살포작업 개선을 위한 보조구 등 및 시설 지원
- 농약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 장치가 있는 농약 보관함, 농약 빈병 수거함 등 보급
- 농약 안전사용 및 안전관리 교육 등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 도 농업기술원 : 생활경영과
 -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촌자원사업 관련 과·담당
- 사업추진주체별 역할
 - 농촌진흥청 : 사업기획 및 예산, 전문교육, 홍보, 평가, 지역지원 등
 - 도 농업기술원 : 사업계획 검토, 사업점검 및 지도, 평가
 - 시군 센터 : 사업 주관, 마을 사업실행 지원,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사후관리, 농업인교육, 홍보, 평가 등

□ 행정사항

- 추진계획 제출 : 3. 10(제1호 서식)
- 추진실적 제출 : 11. 30(제2호 서식)

[제1호 서식]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사업 추진 계획(3. 10)

1. 일반현황

사업마을 및 대표자 현황

도	마을명	주작목	대표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구 및 인구

도	마을명	총가구수 (호)		참여 농가수 (호)	참여 희망 농업인수(명)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소계	55세 미만	55~65세 미만	65세 이상	소계	55세 미만	55~65세 미만	65세 이상	

* 사업대상은 농업인으로 한정하되, 농업인 수는 참여 농가수의 참여자로 남·여구분

2. 농기계 보유 현황

종 류	보유 농가수	보유 대수	비 고
경 운 기			
트 랙 터			
이 앙 기			
콤 바 인			
로터리(관리기)			
예 초 기			

3. 농작업 재해 현황(최근 2년간, 2010. 1 ~ 2011. 12)

순번	성명	연락처	사고일자	사고경위	조치내용

4. 마을 단체 활동 현황(작목반 등)

명 칭	참여인원(명)	최근의 주요 활동

5. 마을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직책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주 농사 작목

6. 사업참여자 명단

NO	농업인 성명	농가 세대주명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번지)	작목
1	김말식	김말식	본인	321-1230	신대리 3	사과, 고추
2	이영자	김말식	부인	321-1230	신대리 3	사과, 고추
3	박영호	박영호	본인	321-3456	신대리 4	사과
4	박신영	박영호	아들	321-3456	신대리 4	사과

* 이 명단은 각종 조사, 진단, 평가 등에 활용 예정임.

※ 첨부 : 마을별 실적

[제2호 서식]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사업 추진실적(11. 30)

1. 일반현황

지역	마을명	주작목	총가구수(호)			사업참여 농가(호)	사업 참여 농업인(명)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시군									
계									

2. 사업추진실적

가. 마을 운영위원회 활동

지역	마을명	위원수 (명)	운영실적		주요내용
			횟수(회)	인원(명)	
시군					
계					

나. 교육 및 회의

농약안전관리 교육

지역	구 분	교육실적		주요내용
		횟수(회)	인원(명)	
시군	마을명			
계				

농작업 안전교육 및 회의

지역	마을명	농작업안전교육		회의, 견학		기타		주요내용
		횟수 (회)	인원 (명)	횟수 (회)	인원 (명)	횟수 (회)	인원 (명)	
시군								
계								

* 농작업 안전 교육 실적 : 농약안전관리 이외의 농작업 안전 교육

다. 농약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농약안전관리

지역	마을명	농약보관함 (개)	농약빈병 수거함(개)	폐농약 수거함	비고
시군					
계					

* 농약보관함(잠금장치가 있는 것만 해당)

농약 전용 보호구 보급 실적

지역	마을명	수 량(벌, 개)							비 고
		계	농 약 방 제 복	고글	마스 크	장갑	신발	기타	
시군									기타 :
	계								

농약 살포작업 및 작업환경 개선

지역	마을명	장비 · 시설명	수량(개,조)	비 고
시군				
	계			

3. 농작업 재해 현황(2012. 1 ~ 11월)

순번	성명	연락처	사고일자	사고경위	조치내용
1					
2					
3					
-					

4. 사업비 집행 실적

○ 총괄

(단위 : 백만원)

지역	마을명	총 계	국 비	시군비	자부담	기 타
시군						
계						

○ 사업비 집행 세부실적

마을명	구 분	추진내용	회/명 종/개	금액 (천원)	비고
	회의 및 교육				
	농약전용보관함				
	농약전용보호구				
	농약작업환경개선				
	기타				
계					

5. 홍보 및 교재

지역	마을명	홍 보				교재
		계	TV·라디오	신문·잡지	인터넷	
도		회	회	회	회	종 부
계						

6.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7.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

8. 관련사진

※ 첨부 : 마을별 실적

4) 농업인 피로해소 체조 보급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기술보급부 생활경영과(지방농촌지도관 조금순·지방농촌지도사 홍희연, 031-229-5881,5)입니다.

□ 목 적

- 근력, 유연성 운동 등 능력향상을 위한 피로해소 체조 프로그램 보급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 예방
- 퇴행성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과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건강증진 도모

□ 추진방향

- 근골격계 질환 등 농작업성 질환 예방 효과가 높은 활력체조 보급
-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화 및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사업량 : 4개소 (평택, 김포, 광주, 연천)
- 사업비 : 80백만원(개소당 20백만원, 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대상 : 농작업 피로해소를 필요로 하는 농촌마을 2~3개마을
- 사업내용 :
 - 농업인의 건강을 위한 피로해소 체조 (고관절,척추,유연성 운동 등)
 - 농작업 피로를 해소하고 농작업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인 보완·개선
- 지원내역
 - 교육용 기자재 및 실습재료 구입, 강사료 등

□ 기대효과

-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인 활력 증진
- 농업인, 노인, 여성농업인 등 농작업성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 행정사항

- 추진 계획 제출 : 3. 20(제1호 서식)
- 추진 실적 제출 : 11. 30(제2호 서식)

<제 1호 서식>

농업인 피로해소 체조 보급 추진계획(3. 20)

1. 교육계획

시군	교육 계획					
	대상	기간	마을명	회수	인원	주요내용

2. 예산집행계획

시군	집행 계획(천원)				
	구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3. 예상 성과물

항목	성과	비고
예) 신체안정성 향상	22%	
어깨결림 향상	25%	
유연성 향상 등	30%	

* 시군별 자체 평가항목 설정 가능

4. 기대효과

-
-

[제2호 서식]

농업인 피로해소 체조 보급 추진실적(11. 30)

1. 교육실적

시군	교육실적						예산집행실적 (단위:천원)			
	대상	기간	마을명	회수	인원	주요내용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2. 프로그램 만족도

시군	대상	조사 인원	조사결과				보완, 발전사항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	
		명	명(%)			명(%)	

3. 추진성과

항 목	성과	비고
예) 신체안정성 향상	22%	
어깨결림 향상	100%	
유연성 향상	30%	

* 교육추진후 자체 평가 항목 설정 가능

4. 우수사례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관련사진 2~4장